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1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0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(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)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6조의2)
 -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규정
- 나.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7조의2)
 -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을 규정
- 다.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0조의2)
 -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규정
- 라.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조례 신설 (안 제11조의2)
 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9. 12. 18. ~ 2020. 1. 7.) :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원안 의결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”을 “「주차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
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 유지
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
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

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

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.
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.
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
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
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폭원”을 “너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1. 노상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

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2. 노외주차장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
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
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

2. 지역특산물 판매장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
세차장(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

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

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
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
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

제12조 제4항 중 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
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
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
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----- -----. |
| <신 설> | 제6조의2(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공영주차장관리자(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주차장관리자가 상주(常駐) 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로서 유지관리 책임 2.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.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.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|
| <신 설> | 제7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|

| | |
|--|---|
| | <p>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.</p> <p>2.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,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.</p> <p>3.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·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.</p> <p>4.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.</p> <p>5.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</p> <p>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,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</p> <p>①----- ----- 너비,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시행규칙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0조의2(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상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: 한 면 이상 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. 노외주차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1조의2조(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)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. 지역특산물 판매장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(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 |

| | |
|--|--|
| | <p>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 정비업소</p> <p>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 |
| 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·③ (생략)</p> <p>④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.</p> | 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·③ (생략)</p> <p>④ 시행규칙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2. <u>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(행정리를 말한다)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 한다.</u></p> | <p>제13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</p> <p>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.</p> |

[붙임]

관 계 법 령

「주차장법」 (2018. 12. 18.) - 2019. 1. 19. 시행

제10조의2(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)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)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(2018. 3. 21.) - 2019. 3. 1. 시행

제1조의2(실태조사 방법 등)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2. 6., 2016. 4. 12.>

8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(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 10. 29., 2012. 7. 2., 2016. 12. 30.>

4.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(이하 "시·군 또는 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

[붙임]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도시과장 주현관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470 |